



# 법 무 부

수신자 강성준 귀하 (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2층 천주교인권위원회)  
(경유)

제 목 정보 (  공개     부분 공개     비공개 ) 결정 통지서

(앞 쪽)

접수번호 7324761	접수일 2020. 12. 15.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청구 내용	<p>국가인권위원회의 ‘수용자 우송·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’ 시행 중지 권고(19진정0728300 등) 관련,</p> <p>1) 2020년 12월 4일 귀 기관이 산하 기관에 하달한 ‘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시달’ 공문</p> <p>2) 최근 귀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이행계획서</p> <p>※참고: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공문의 붙임자료가 있을 경우 붙임자료도 함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----	---

공개 내용	<p>강성준님 안녕하십니까?</p> <p>법무부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.</p> <p>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</p> <p>[ 결정내역 : 정보공개 ] (A4 : 총 2매)</p> <p>1. 2020.12.4. 산하기관에 하달한 '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에 따른 후속조치 시달' 공문 : 공개(1매)</p> <p>2. 인권위 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 및 이행계획(19진정0728300 등 15건, 교정기관 외부 도서 반입제한) : 공개(1매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 이행계획에 있는 별첨문서 「수용자 우송차입도서 합리화 방안」 시행 중지 지시(전 언론신문)는 분류심사과에서 작성·생산한 문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청구 정보에 대한 결정내용이 미흡하였거나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/p> <p>1. 법무부 사회복귀과 교위 조민석(02-2110-3416)</p> <p>2. 법무부 분류심사과 교감 김동욱(02-2110-3606)</p>
-------	--



공개 일시	2021. 01. 07. 09	공개 장소	
*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			
공개 방법	[ ] 열람·시청 [ ] 사본·출력물 [x] 전자파일 [ ] 복제·인화물 [ ] 기타		
수령 방법	[ ] 직접 방문 [ ] 우편 [ ] 팩스 전송 [x] 정보통신망 [ ] 기타		
납부 금액	① 수수료	② 우송료	③ 수수료 감면액
	0원	0원	0원
	계(①+②-③)		0원
납부일	수수료 산정 명세		수수료 납입계좌(입금 시)
			[ ]
*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,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.			
비공개 (전부 또는 일부) 내용 및 사유			

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## 법무부장관

주무관 **전은영** 사무관 **박평규** 사회복귀과장 **한태환**

협조자

시행 사회복귀과-6657(2020. 12. 23.)

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(중앙동) 법무부

전화번호 02-2110-3419

팩스번호 02--

/ komaangma@korea.kr

/ 공개 구분

## 유의 사항

1.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  - 가.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  - 나.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 - 다.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2. 수수료는 **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** 내실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.
  - 가.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
  - 나. 수입인지(정부기관) 또는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
3.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**납부일**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.
4.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5.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**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 : [www.simpan.go.kr](http://www.simpan.go.kr)) 또는 행정소송**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6.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.
7.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,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